



제 424회 국회 (임 시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2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도를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제도로 전환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7.

다. 회 부 일 : 2023.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Ⅲ. 검토의견

1.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도를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제도로 전환

개정안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생략)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 7. (생략) ③·④ (생략)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현행	개정안
<u>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u> <u>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 <u>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u> ⑥ <u>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및 취소와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u> 3. <u>제18조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u>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제23조(청문)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 ----- ----- ----- ----- -----

현행	개정안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¹⁾ 현재까지 22개의 도시숲등이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았음.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증	6개소	11개소	5개소

※ 자료: 산림청

인증(certification)이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으로, 사전에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문성을 가진 제3

1) 참고자료1. 모범 도시숲 인증제 개요 참조

자인 인증기관이 적합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의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증 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10년 155개 → '22년 257개)²⁾하여 인증의 난립·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³⁾

국무조정실에서 257개 인증 전체를 재검토(2022. 12.)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⁴⁾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르면,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도는 ① 산림청이 운영하는

2) 우리나라 인증 제도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많은 수준(미국 93개, EU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으로 나타남.(국무조정실, 2024)

3) 이광호·김권일, “반복되는 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의 도입과 신설 인증 심의 강화로 해결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3. 20.

4) 국무조정실은 인증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① 기존 규제나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제 인증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에 유사인증도 없는 등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한 인증이 다수 존재하며, ② 안전성 확인보다는 품질보장 또는 특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장·급부행정 수단으로 인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③ 인증 취득·유지를 위한 기업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유사한 제도인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제도가 존재하고 ② 법정 인증 제도로 운영되는 해외사례가 없으며 ③ 최근 5년간 인증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도록 소관 부처에 통보되었음.⁵⁾

다만, 산림청에 따르면 제도 관련 법 시행(2021. 6.) 이후 인증제도를 마련 중인 시기에 국무조정실의 인증 재검토가 이루어져 인증 실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는 총 22개의 도시숲등이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 시행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등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유사한 제도인 ‘녹색도시 우수사례’가 현재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제도’에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 수용 시 기존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5) 참고자료2. 모범 도시숲 인증제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 종합의견 참조

6) 유사 입법례로 2025년 8월 1일 시행예정인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일부개정) 부칙 제2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화장품법」 부칙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

문 의 처
02)6788-5424

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1

모범도시숲 인증제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 도시숲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 등 도시숲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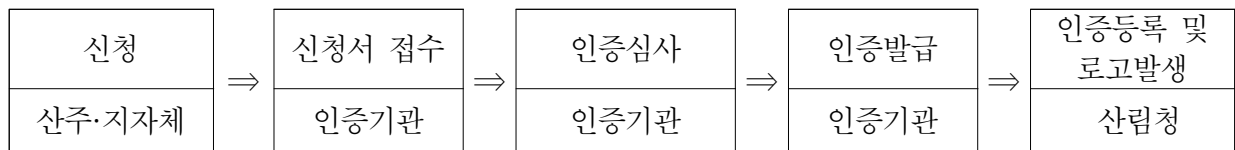
○ 인증기관 : 도시숲지원센터 중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생명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현황 : 3개소(생명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세종수목원)

○ 인증대상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 인증절차

- 인증심사는 인증기관의 서류심사, 모범도시숲등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



현장심사단 자격요건	인증위원회 자격요건
1. 도시숲 관련 전문가 2. 조경산림관련 기술인 3. 관련분야 퇴직 공무원 4. 관련단체 종사자 및 공원 자원활동가 5.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증기관이 인정한 자 2. 기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 인증운영 : 5년 주기 재심사를 통해 인증의 신뢰성, 영예성 유지

○ 인증규모 : 산주·지자체 등의 신청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증	6개소	11개소	5개소

□ 인증 기준

- 서류심사 : 서류심사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현장 심사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심사 : 분야별 현장심사기준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최종 종합평가를 진행
- 종합심사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부합성,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 기타 인증기관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사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인증 현황

구분	인증년도	명칭	비고
도시숲·생활숲	2022	평택시 바람길숲	경기 평택
도시숲·생활숲	2022	포항 철길	경북 포항
가로수	2022	화개 십리벚꽃길	경남 하동
가로수	2022	교대로 그린등꽃길	부산 연제구
가로수	2022	완도 호랑가시나무 가로수길	전남 완도
가로수	2022	도초 팽나무 10리길	전남 신안
도시숲·생활숲	2023	김포 모담공원	경기 김포
도시숲·생활숲	2023	수원 노송숲	경기 수원
도시숲·생활숲	2023	인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인천 남동구
도시숲·생활숲	2023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인천 미추홀구
도시숲·생활숲	2023	인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인천 서구
도시숲·생활숲	2023	목포 십자형 도시숲	전남 목포
도시숲·생활숲	2023	부산 월드컵대로 바람길숲	부산 연제구
도시숲·생활숲	2023	포항 해도 도시숲	경북 포항
가로수	2023	수원 정조로 테마 가로수길	경기 수원
가로수	2023	완주 명품가로수길	전북 완주
가로수	2023	구미 인동 도시숲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경북 구미
도시숲·생활숲	2024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경북 구미
도시숲·생활숲	2024	서울 올림픽공원	서울 송파구
도시숲·생활숲	2024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교숲	경북 영천
도시숲·생활숲	2024	인천 세계평화의숲	인천 중구
가로수	2024	인천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길	인천 미추홀구

참고2

모범도시숲 인증제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 종합의견

□ 종합의견

□ 존속 □ 개선 □ 통합 ■ 폐지

[필요성] - 법정제도 제외

- 국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동 제도는 법정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해외사례가 없고, 동일부처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인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가 있어, 법정 인증 제도를 통한 사회적 실익 및 인증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필요성] 법정인증제도에서 폐지 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검토항목	검토결과
법정제도제외	• 법정근거 삭제 후 지자체에서 운영 시, 인증취소 등 국민피해 없음
유사제도	• 동 제도와 동일 및 유사 제도인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가 있음
해외유사제도	• 도시 숲 등을 인증하는 해외 법정 적합성 평가제도 없음.
인센티브	• 없음(소관법령 및 타법령에 의한 인센티브 모두 없음)
발급건수	• 없음

[적절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대상품목축소	• 인증대상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도시 내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목군을 형태 및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대상품목 축소 없음
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90일, 인증비용 없음
유사파생모델 확대	• 없음
유효기간	• 없음
인증기준-표준 일치화	• 없음

[절차간소화]

검토항목	검토결과
포괄 수용	• 없음
절차 간소화	• 절차 지침 없음
타 성적서 수용	• 성적서 없음

[완성도]

검토항목	검토결과
명확성	적합성평가제도의 대상(인증대상, 신청자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증기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 불가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정보공개, 사후관리체계, 위법사항 처벌근거 모두 미비함 (정보공개) 인증 정보 공개되어 있지 않음 (사후관리) 유효기간 및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요건 없음 (처벌근거) 인증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근거 없음